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5가합55479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可 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7. 2. 24.

판결 선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1,819,685원 및 위 돈 중 902,072,392원에 대하여는 2015.7. 16.부터, 364,496,743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각 2015. 9. 14.까지는 연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 접수 제621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 접수 제621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747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6. 가.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8. 접수 제32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과 보증채무 이행

1) 원고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2007.12. 7.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 [표1] 기재와 같이 한국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 A은 F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표 1]

순번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1	한국외환은행	H	2008. 12. 11. (2015. 12. 4.로 변경)	480,000,000원 (360,000,000원으로 변경)
				600,000,000원
2	중소기업은행	I	2009. 8. 5. (2015. 7. 31.로 변경)	935,000,000원 (892,500,000원으로 변경)
				1,100,000,000원

2)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F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및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이후 F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는 [표2]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대출은행들에 F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다.

[표2]

순번	대출은행	신용보증사고 통지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1	한국외환은행	2015. 5. 21.	2015. 7. 23.	364,496,743원
2	중소기업은행	2015. 5. 26.	2015. 7. 16.	902,072,392원

4)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7,614,340원이며, 그 중 2,363,790원을 회수하여 5,250,550원이 남아 있다.

나.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표3]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3]

순번	계약 상대방 (피고 A과의 관계)	계약 내용	목적 부동산 (별지1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1	피고 B (자녀)	2015. 3. 30. 증여	1~6항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 접수 제62169호
2	피고 C (자녀)	2015. 3. 30. 증여	7~9항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 접수 제62170호
3-1	피고 D (부인)	2015. 4. 10. 증여	10항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74712호
3-2			11항	
4	피고 E	2015. 4. 28. 매매, 매매대금	12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8. 접수 제32571호

670,000,000원

2) 한편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8. 19. 피고 D에게 잉여금 23,179,53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8. 5.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8014호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마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71,819,685원(=대위변제금 364,496,743원 + 대위변제금 902,072,392원 + 법적절차비용 잔존금5,250,550원) 및 위 돈 중 902,072,39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7. 16.부터, 364,496,74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7.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표3] 기재 각증여 내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 내지매도한 것은 무자력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 D

피고 B, C, D은 별지1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 집안 대대로 상속되어온 것으로 위 피고들 의지와 상관없이 이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의사 개입 없이 무단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주장을 선의항변으로 선행하더라도, 위 피고들 모두 피고 A의 가족으로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법률상 추정되는 악의 를 반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E

피고 E은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전제로,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 라고 항변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추정되는 악의를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E은 피고 A과 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① 피고 E은 매매대금 670,000,000원에서 팔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500,000,000원을 공제한 170,000,000원을 피고 A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올마 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15. 5. 7. 피고 A 계좌로 170,000,000원을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축산농협 우장산역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2015. 5. 6. 160,000,000원, 2015. 5.7. 30,000,000원, 2015. 5. 27. 36,000,000원 합계 226,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E은 어떠한 사유로 위 각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 E은 매매대금 지급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 A의 부인인 피고 D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가 그 돈 일부를 다시 피고 A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더욱이 피고 E은 피고 A으로부터 아직까지 위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지도않았고, 그럼에도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E은 팔탄농업협동조합원인 피고 A이 채무자로 남아 있는 것이 금리나 이자납입주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피고 A이 배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대금지급을 갈음하는 담보대출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에 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미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매매의 모습이 아님이 분명하다.

③ 한편 피고 E은 위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출이자를 자신이 납입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한다. 을마 제13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E 계좌에서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5. 10. 12. 10,278,082원, 2016. 4. 6. 9,386,087원 합계 19,664,169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E이 을마 제13호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고의로 삭제함에 따라, 위 증거만으로는 대출이자 납입 시점 전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그무렵 피고 E이 피고 A 측으로부터 대출이자 상당액을 따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피고 E이 피고 D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56,000,000원(= 226,000,000원 - 170,000,000원)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이자 지급 사실 역시 정상적인 매매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표3] 순번1 기재, 피고 C은 순번2 기재, 피고 D은 순번3-1 기재, 피고 E은 순번4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순번3-2의 경우 사해행위로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이 이전되었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D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고, 다만 원고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아, 판사 정은영, 판사 박민지